

홋카이도 긴급사태조치

2021년 5월 28일

실시내용

국가에 의한 긴급사태 조치구역의 추가를 토대로, 더 이상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람간 접촉 기회를 철저히 줄일 목적으로 신형독감 등 대책특별조치법 제45조 및 동법 제 24조에 따라, 도민 등을 대상으로 협력요청을 하는 동시에, 필요한 협력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도 전체를 긴급사태 조치 대상으로 하고, 특정 조치 구역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강화된 대책을 실시한다.

대상구역

특정조치구역

삿포로시, 에베쓰시, 치토세시, 에니와시, 기타히로시마시, 이시카리시, 도베쓰초, 신시노쓰무라, 오타루시, 아사히카와시

조치구역

특정조치구역 이외의 시정촌

기 간

2021년 6월 1일 (화) ~ 6월 20일 (일)

특정조치구역

【도민 및 도내에 체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요청】

기 간

2021년 6월 1일 (화) ~ 6월 20일(일)

요청내용

(외출할 때는)

◆ 불필요한※외출이나 이동을 삼간다. 특히 20시 이후의 외출을 삼간다.

더하여, 특히 낮, 주말의 외출을 삼간다. (특조법제45조제1항)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간에의 통원, 식료품·의료품·생활필수품의 구입, 필요한 직장출근, 옥외에서의 운동이나 산책 등, 생활이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외출을 삼가주십시오. 아울러, 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이더라도 혼잡한 장소나 시간을 피해 행동해 주십시오.

◆ 불필요한 도도부현간 이동, 특히 긴급사태조치지역과의 왕래는 엄히 삼간다.

(특조법제45조제1항)

※ 홋카이도 이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아무래도 피할 수 없는 경우는,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하는 것 외에 체온 체크나 필요에 따라서 PCR 검사를 받는 등, 몸상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는)

◆ 감염방지 대책이 철저하지 않은 음식점 등이나 휴업요청 또는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하고 있지 않는 음식점 등의 이용을 엄히 삼간다. (특조법제45조제1항)

◆ 길거리·공원 등에서의 집단 음주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을 삼간다. (특조법제45조제1항)

◆ 가능한 한 동거하고 있지 않는 분과의 음식섭취를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홋카이도 방문을 검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협력의뢰】

협력의뢰
내용

◆ 코로나19의 기본적 대처방침에 의거하여 홋카이도 방문을 극히 삼간다 (협력의뢰)

※기본적 대처방침으로는, 변이바이러스로 바뀌었다고 추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으로의 불필요한 이동을 최대한 삼가고 있습니다. 특히,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귀성이나 여행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체온체크나 필요시 PCR검사를 받는 등 몸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 간 2021년 6월 1일 (화) ~ 6월 20일(일)

시설대상

【음 식 점】 음식점(배달·테이크아웃 제외)
 【유흥시설】 바, 노래방 등에서 식품위생법의 음식점영업허가를 받고 있는 점포 및
 음식점영업허가를 받고 있지 않는 노래방
 【결혼식장】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영업허가를 받고 있는 결혼식장

【주류 혹은 노래방시설을 제공 (이용자에 의한 주류 점내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음식점 포함) 하는
 음식점 (주류 및 노래방시설의 제공을 중지한 경우를 제외)】
 ◆ 휴업한다 (특조법제45조2항)
 【상기 이외의 음식점 (배달·테이크아웃 제외)】
 ◆ 영업시간은 5시부터 20시까지 (특조법제45조2항)

요청·협력의뢰 내용

◆ 다음의 감염방지대책을 실시한다 (특조법제45조2항)

- 종업원의 검사종업원에 대한 검사 권장·입장자의 정리·유도
- 발열, 기타 증상이 있는 사람의 입장금지
- 손 소독 설비의 설치·사업장 소독
- 마스크 착용 기타 감염 방지에 관한 조치의 주지
- 정당한 이유없이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방지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자의 입장금지(이미 입장한 사람의 퇴장 포함)
- 시설을 환기한다.
- 아크릴판 등의 설치 또는 이용자의 적절한 거리 확보 등 비말감염방지에 효과가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

◆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9항)
 ◆ 결혼식장은 음식점과 동일은 요청에 따른다. 또한 가능한 한 단시간
 (1.5시간이내) 으로, 소수인원 (50인 또는 50% 중 적은 인원) 으로 개최한다.(협력의뢰)

※요청에 협력해 주신 사업자에게는 지원금 지불【조정중】

【음식점 등에 대한 핫카이드의 협력금 처우】 5월 16일 ~ 5월31일의 처우
 중소기업:하루당 매출액에 따라 4만엔~10만엔 대기업:하루당 매출액 감소액에 따라 최대20만엔

【이벤트의 개최에 대한 요청 · 협력의뢰】

기간

2021년 6월 1일 (화) ~ 6월 20일(일)

※ 5월 31일까지 판매된 것에 한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티켓은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6월 1일부터, 다음의 기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6월 21일 이후의 티켓에 대한 신규판매를 정지할 것.

인원수
상한 및
수용률

○ 인원수 상한 **5000명** 동시에 수용률 **50%** (특조법제24조제9항)

※ 감염예방이 철저하지 않는 경우는 무관객·온라인송신으로의 개최에 더하여, 연기 또는 중지를 검토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요청·
협력의뢰
내용

- ◆ 주류를 제공 (이용자에 의한 주류의 점내반입을 포함)하지 않는다 (협력의뢰)
- ◆ 영업시간은 **21시**까지 (무관객으로 개최되는 행사 제외) (특조법 제24조제9항)
- ◆ 이벤트개최에 대해서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 제24조제9항)
- ◆ 행사 전후의 **3밀** 및 음식섭취 방지에 대한 조치 철저 (특조법 제24조제9항)
- ◆ 국가의 접촉확인 앱 (**COCOA**)·훗카이도코로나통지시스템의 도입, 명부의 작성 등 추적대책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 제24조제9항)
- ◆ 참가자 등의 바로 귀가(직행·직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알림 및 호소 등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 제24조제9항)
- ◆ 전국적 이동을 수반하는 행사 혹은 참가자가 1,000명을 넘는 행사의 실시에 대해서는 개최요건 등에 관하여 도에 사전상담을 한다 (특조법 제24조제9항)

기 간

2021년 6월 1일 (화) ~ 6월 20일(일)

요청·
협력의뢰
내용

- ◆ 직장출근에 대해서, 재택근무 (텔레워크) 의 활용이나 휴가 촉진 등에 의해 출근자수의 **70%감소**를 목표로 한다. (협력의뢰)
- ◆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에도 시차출근 및 자전거 통근 등으로 사람간 접촉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강력히 추진한다. (협력의뢰)
- ◆ **20시** 이후의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철저히 하는 것을 바탕으로 사업 지속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20시** 이후의 근무를 억제한다. (협력의뢰)
- ◆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휴식 장소나 식사 장소 등 직장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를 재점검하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주요 관광시설 등의 라이트업이나 변화가의 옥외광고 등에 대해서 **20시** 이후, 야간 소등한다. (협력 의뢰)

【 교통사업자에게 드리는 협력의뢰 】

기 간

2021년 6월 1일 (화) ~ 6월 20일(일)

협력의뢰
내용

- ◆ 시영교통 (지하철 · 노면전차) 에 대한 막차 단축운행이나
주요 터미널 (오도리역, 샛포로역) 에서의 체온검사를 실시한다 (협력의뢰)
- ◆ 다른 교통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지막 운행편의 단축 등의 대응을
검토한다 (협력의뢰)

기 간

2021년 6월 1일 (화) ~ 6월 20일(일)

요청내용

- ◆ 위생관리 매뉴얼 (2021.4.28 개정) 에 따라 학교교육 활동, 기숙사에 대한 감염방지 대책 실시를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아동·학생과 동거 가족의 감염 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학급·학년·전교에서의 신속하고 폭넓은 휴교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이 경우, 온라인 학습 등에 의해 학습을 보장하는 동시에 집에 있는 것이 곤란한 아동의 거처를 확보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학교행사 (운동회, 체육제, 수학여행, 숙박학습 등) 를 중지, 연기, 축소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고등학교·특별지원학교에서는 분산등교와 온라인 학습을 병행한 하이브리드형 학습을 실시한다 . (특조법제24조제9항)
- ◆ 동아리 활동은 원칙적으로 중지하고 전국·전도 대회 등으로 이어지는 활동으로 제한하며 건강 상태의 다중 체크를 하는 동시에 코로나19대책의 전교 지도체제를 확립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대학, 전문학교 등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학급 분할 수업이나 대강의실 활용 등의 실시로 밀접접촉을 방지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음식점 등 이외의 시설에 대한 요청·협력의뢰 ① 휴업·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시설】

기간 2021년 6월 1일(화) ~ 6월 20일(일)

요청·협력의뢰
내용

시설의 종류	내역	요청·협력의뢰내용	
		1,000㎡초과	1,000㎡이하
상업시설	대규모소매점, 쇼핑센터, 백화점 등 (생활필수물자를 제외)	◆평일은 영업시간을 20시까지, 토,일,공휴일은 휴업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대규모소매점, 쇼핑센터, 백화점 등 중에서 생활필수물자를 제외 ◆주류 및 노래방 설비를 제공(이용자에 의한 주류 점내반입 포함) 하지 않는다 (협력 의뢰) ◆입장자의 정리, 유도 등을 철저히 한다(특조법제24조제9항) ◆정리, 유도 등의 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린다.(협력 의뢰)	◆영업시간은 20시까지한다.(협력의뢰) ※대규모소매점, 쇼핑센터, 백화점 등 중에서 생활필수물자를 제외 ◆주류 및 노래방 설비를 제공(이용자에 의한 주류 점내반입 포함) 하지 않는다 (협력 의뢰) ◆입장자의 정리, 유도 등을 철저히 한다(특조법제24조제9항) ◆정리, 유도 등의 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린다.(협력 의뢰)
운동·유기시설	피칭코점, 게임센터 등		
유흥시설	성풍속점, 경마투표권발매소, 장외마(경차·경정)발매장 등		
서비스업	대중목욕탕, 피부관리실 등 (생활필수서비스를 제외)		

※1,000㎡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특조법에 의거 휴업 및 영업단축의 요청에 협력해 주신 사업자에게는 지원금 지급【조정중】

【대규모시설에 대한 협력금의 국가 기준액】 5월16일~5월31일의 처우

대규모시설 20만엔×면적 / 1,000㎡×영업시간단축비율 임차인 2만엔×면적 / 100㎡×영업시간단축비율

※영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영업시간단축 시간의 비율

기간

2021년 6월 1일 (화) ~ 6월 20일(일)

요청·협력의뢰 내용

시설의 종류	내역	요청·협력의뢰내용
극장 등	극장, 관람장, 영화관, 공연장, 플라네타륨 천문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원수 상한 5,000명 동시에 수용률 50% 이내 (특조법제24조제9항) ◆(1,000㎡ 초과 시설) 20시까지의 시간 단축 (이벤트 개최의 경우는 21시까지) (특조법 제24조제9항) ◆(1,000㎡이하 시설) 20시까지의 시간 단축 (이벤트 개최의 경우는 21시까지) (협력의뢰) ◆입장자의 정리, 유도 등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 제24조제9항) ◆정리, 유도 등의 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린다 (협력의뢰) ◆주류 및 노래방 설비를 제공 (이용자에 의한 주류의 점내반입 포함)하지 않는다 (협력의뢰) ◆영화관에 대해서는 (1,000㎡ 초과 시설) 21시로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1,000㎡이하 시설) 21시로 한다 (협력의뢰)
집회·전시시설	집회장, 공회당, 전시장, 대여회의실, 문화회관 등	
호텔·여관	호텔, 여관 (집회·모임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한함)	
운동시설, 유기시설	야구장, 육상경기장, 스포츠클럽, 테마파크, 유원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원수 상한 5,000명 동시에 수용률 50% 이내 (특조법제24조제9항) ◆(1,000㎡ 초과 시설) 20시까지의 시간 단축 (이벤트 개최의 경우는 21시까지) (특조법 제24조제9항) ◆(1,000㎡이하 시설) 20시까지의 시간 단축 (이벤트 개최의 경우는 21시까지) (협력의뢰) ◆입장자의 정리, 유도 등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 제24조제9항) ◆정리, 유도 등의 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린다 (협력의뢰) ◆주류 및 노래방 설비를 제공 (이용자에 의한 주류의 점내반입 포함)하지 않는다 (협력의뢰)
박물관 등	박물관, 미술관 등	
결혼식장	결혼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점과 동일한 요청에 따른다 (특조법제45조제2항) ◆가능한 한 시간단축(1.5시간 이내)으로 최소인원 (50인 혹은 50% 수용률 중 적은 인원수)로 개최 (협력의뢰)

※1,000㎡를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특조법에 의거하여 영업시간단축의 요청에 협력해 주신 사업자에게는 지원금 지급 【조정중】
(다른 지원내용을 활용한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규모시설(1,000㎡초과)에 대한 협력금의 국가 기준액】 5월16일~5월31일의 경우
대규모시설 20만엔 × 면적 / 1,000㎡ × 영업시간단축비율 임차인 2만엔 × 면적 / 100㎡ × 영업시간단축비율

※영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영업시간단축 시간의 비율

【음식점 등 이외의 시설에 대한 요청·협력의뢰③】

기 간 2021년 6월 1일 (화) ~ 6월 20일(일)

대상시설	요청·협력의뢰
보육소, 간호노인보건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위험이 높은 활동 등의 제한 (협력의뢰)
장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류를 제공 (이용자에 의한 주류반입 포함) 하지 않는다 (협력의뢰)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장자의 정리유도등을 철저히 한다(특조법제24조제9항)
넷카페 (PC방), 만화방, 목욕탕, 이발소, 전당포, 대여의상실, 세탁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장자의 정리유도등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점포에서 음주로 이어지는 주류제공 (이용자에 의한 주류반입 포함) 및 노래방설비의 사용 자숙 (협력의뢰)
자동차교습소, 학습학원 등	온라인 활용 등의 촉구 (협력의뢰)

공립시설 ◆도립시설 및 시정촌립 시설은 원칙적으로 휴관한다

조치지역

기간

2021년 6월 1일 (화) ~ 6월 20일(일)

요청내용

- (외출할 때는)
- ◆ 불필요한※외출이나 이동을 삼간다. 특히 20시 이후의 외출을 삼간다. 더하여, 특히 낮, 주말의 외출을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간에의 통원, 식료품·의료품·생활필수품의 구입, 필요한 직장출근, 옥외에서의 운동이나 산책 등, 생활이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외출을 삼가주십시오. 아울러, 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이더라도 혼잡한 장소나 시간을 피해 행동해 주십시오.
 - ◆ 불필요한 도도부현간 이동, 특히 긴급사태조치지역과의 왕래는 엄히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홋카이도 이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아무래도 피할 수 없는 경우는,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하는 것 외에 체온 체크나 필요에 따라서 PCR 검사를 받는 등, 몸상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을 섭취할 때는)
- ◆ 감염방지 대책이 철저하지 않은 음식점 등이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하고 있지 않는 음식점 등의 이용을 삼간다. (특조법제24조 제9항)
 - ◆ 「침묵식사」 실천 (식사는 4명 이내 등 소수인원으로, 단시간에, 과음하지 않고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며 대화시에는 마스크 착용) (특조법제24조 제9항)
 - ◆ 길거리·공원 등에서의 집단 음주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을 삼간다. (특조법 제24조제9항)

【 홋카이도 방문을 검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협력의뢰】

협력의뢰 내용

- ◆ 코로나19의 기본적 대처방침에 의거하여 홋카이도 방문을 극히 삼간다 (협력의뢰)
 ※기본적 대처방침으로는, 변이바이러스로 바뀌었다고 추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으로의 불필요한 이동을 최대한 삼가고 있습니다. 특히,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귀성이나 여행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체온체크나 필요시 PCR검사를 받는 등 몸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등에 대한 요청】

기 간

2021년 6월 1일 (화) ~ 6월 20일(일)

대상시설

[음 식 점] 음식점 (배달 · 테이크아웃 제외)
 [유흥시설] 바, 노래방 등에서 식품위생법의 음식점영업허가를 받고 있는 점포 및
 음식점영업허가를 받고 있지 않는 노래방
 [결혼식장]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영업허가를 받고 있는 결혼식장

요청내용

- ◆ 영업시간은 **5시부터 20시까지** (특조법제24조9항)
- ◆ 주류의 제공(이용자에 의한 주류의 점내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음식점을 포함)은 **11시부터 19시까지** (특조법제24조9항)
- ◆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9항)
- ◆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은 점포에서 노래방 설비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설비의 이용을 시행하지 않는다. (특조법제24조9항)

※ 요청에 협력해 주신 사업자에게는 지원금 지불 【조정중】

【음식점 등에 대한 협력금의 국가 기준액】 5월16일~5월31일의 처우

중소기업 : 하루당 매출액에 따라 2.5만엔 ~ 7.5만엔

대기업 : 하루당 매출액 감소액에 따라 최대20만엔

기간

2021년 6월 1일 (화) ~ 6월 20일(일)

※ 5월 31일까지 판매된 것에 한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티켓은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6월 1일부터, 다음의 기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6월 21일 이후의 티켓에 대한 신규판매를 정지할 것.

인원상한 및 수용률

- 인원수 상한 **5,000명** (특조법제24조제9항)
- 수용률
 [100% 이내] 큰 소리로의 환호 · 성원 등이 없음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경우 (※1)
 [50% 이내] 큰 소리로의 환호 · 성원 등이 상정되는 경우 (※2) (특조법제24조제9항)
- ※ 감염예방이 철저하지 않는 경우는 무관객 · 온라인송신으로의 개최에 더하여, 연기 또는 중지를 검토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1 클래식 음악 콘서트, 연극 등, 무용, 전통예능, 예능·연예, 공연·식전, 전시회 등, 음식을 수반하는 발성이 없는 행사 (행사 중 식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필요한감염 방지책이 담보되고 이벤트 중에 발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큰 소리로의 환호 · 성원 등이 없음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경우」로 취급할 수 있다.)
 ※2 록, 팝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공연경기, 공연, 라이브하우스·나이트클럽에서의 이벤트 등 (다른 그룹 간에는 좌석을 1석씩 비우고, 동일그룹 (5명 이내에 한함) 내에서는 좌석간격을 두지 않아도 됨, 즉 수용률은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

요청 · 협력의뢰 내용

- ◆ 주류의 제공(이용자에 의한 주류의 점내반입을 포함)은 **19시까지**(협력의뢰)
- ◆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무관객으로 개최되는 행사 제외) (특조법제24조제9항)
- ◆ 이벤트개최에 대해서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행사 전후의 **3밀** 및 음식섭취를 방지하는 조치 철저 (특조법제24조제9항)
- ◆ 국가의 접종확인 앱 (COCOA) · 핫카이도코로나통지시스템의 도입, 명부의 작성 등 추적대책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전국적 이동을 수반하는 행사 혹은 참가자가 1,000명을 넘는 행사의 실시에 대해서는 개최요건 등에 관하여 도에 사전상담을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기 간

2021년 6월 1일 (화) ~ 6월 20일(일)

요청 · 협력의뢰 내용

- ◆ 직장출근에 대해서, 재택근무 (텔레워크) 의 활용이나 휴가 촉진 등에 의해 출근자수의 **70%감소**를 목표로 한다. (협력의뢰)
- ◆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에도 시차출근 및 자전거 통근 등으로 사람간 접촉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강력히 추진한다. (협력의뢰)
- ◆ **20시** 이후의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철저히 하는 것을 바탕으로 사업 지속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20시** 이후의 근무를 억제한다 (협력의뢰)
- ◆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휴식 장소나 식사 장소 등 직장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를 재점검하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주요 관광시설 등의 라이트업이나 변화가의 옥외광고 등에 대해서 **20시** 이후, 야간 소등한다 (협력 의뢰)
- ◆ 교통사업자는 감염방지대책을 한층 더 철저히 한다. (협력의뢰)
- ◆ **1,000m²**를 초과하는 집객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단축이나 주류 제공 및 노래방 설비의 사용 자속에 대해서 검토한다 (협력 의뢰)

기 간

2021년 6월 1일 (화) ~ 6월 20일(일)

요청
내용

- ◆ 위생관리 매뉴얼 (2021.4.28 개정) 에 따라 학교교육 활동, 기숙사에 대한 감염방지 대책 실시를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아동·학생과 동거 가족의 감염 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학급·학년·전교에서의 신속하고 폭넓은 휴교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이 경우, 온라인 학습 등에 의해 학습을 보장하는 동시에 집에 있는 것이 곤란한 아동의 거처를 확보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학교행사(운동회, 체육제, 수학여행, 숙박학습 등) 를 중지, 연기, 축소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중지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동아리 활동은 원칙적으로 중지하고 전국·전도 대회 등으로 이어지는 활동으로 제한하며 건강 상태의 다중 체크를 하는 동시에 코로나19대책의 전교 지도체제를 확립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대학, 전문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활용이나 학급분할 수업 등의 실시에 의해 밀접접촉을 방지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공립시설

- ◆ 독립시설은 원칙상 휴관한다.
- ◆ 시정촌립시설은 감염상황이나 시설의 목적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휴관 등을 검토한다(협력의뢰)